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제정

항공우주기술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이 대폭 강화 되었다. 산업자원부는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과는 별도로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8월11일 제정, 고시하고 동 요령에 따라 항공우주분야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에 금년중 총 1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78%가 증액된 3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본지에서는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의 내용을 게재하였다.

산업자원부고시제 2000-78호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산업발전법 제 24조에 따라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년 8월 11일 산업자원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및 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 제24조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중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수요조사, 기획, 연차평가,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평가기관”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최종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참여기업”이라 함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라 함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실시계약”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사업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주관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실시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8.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결과 발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을 말한다.
9. “유형적 발생품”이라 함은 산업재산권을 제외한 연구기자재, 시제품 등 개발사업 결과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개발사업의 구분)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1로 구분한다.

1. 상용기술개발사업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및 관련 소재류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
2. 기초기술개발사업 : 특정 품목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용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등의 기술개발사업 또는 기초연구 차원의 기술개발사업

3. 연구기획사업 : 장·단기 개발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기획사업

4. 국제공동개발사업 : 국제기관이 위험분담 방식으로 해외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사업

제2장 관련기관 및 책임자

제5조(전담기관의 업무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개발사업의 수요조사
2. 개발사업 및 주관기관 선정
3. 개발사업비의 배분, 정산 및 관리
4. 개발사업의 연차평가
5.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6.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기타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발사업 관리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발사업의 선정 심의
2. 사업제안요구서의 심의
3. 주관기관의 선정 심의
4. 개발사업의 연차평가결과 심의
5. 기타 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장

2.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장

3.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장

4. 국방부 획득정책과장

5. 과학기술부 전략기술개발과장

6.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장

7.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선임연구부장

8.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 산·관·학·연 전문가중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하나,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①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장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원활한 회무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개발사업 관리책임자 또는 소속직원을 간사로 둔다.

제8조(평가기관) 산업자원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최종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주관기관) ①주관기관은 산업발전법 제24조 제1항의 각 호의 기관 중 당해 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개발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개발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3. 개발사업비의 관리
4. 개발사업의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제10조(총괄책임자) ①당해 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연

구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개발사업비의 상용 발의
3. 개발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의 관리
5. 개발사업 결과의 보고
6.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주관 기관의 장이 요구한 사항의 수행

제11조(참여기업)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당해 개발사업에의 공동 참여
2. 개발사업 중 담당하는 부분의 개발책임
3. 개발사업 중 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관리
4. 개발사업 결과의 우선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

제12조(위탁기관)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위탁사업의 수행
2. 위탁사업비의 관리

제3장 개발사업의 선정 및 공고

제13조 (수요조사) 전담기관의 장은 차기 년도의 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제4조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당해 연도 2/4분기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개발사업의 선정) ①전담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1/4분기까지 전년도에 시행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연도에 수행할 개발사업을 선정하고, 사

업제안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선정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의 단계별 육성계획
2. 관계부처에서 추진중인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선정결과 및 개발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개발사업의 확정 및 공고)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연도에 수행할 개발사업 및 사업제안요구서를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개발사업의 주요 내용, 지원자격, 기술료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사업계획의 심의·확정 등

제16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상용기술 개발사업 또는 기초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총 사업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1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국제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참여조건 등이 명시된 예비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한 후 해외업체와 국제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총 사업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1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주관기관의 선정)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목표 및 수행방법
2. 개발사업의 수행능력(주관책임자의 연구능력 및 연구관리능력 포함)
3.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의 연구시설 확보정도
4. 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5. 개발사업비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6. 제37조에 의한 기술료율
7.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주관기관 선정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촉진법에 의한 특정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이 주관하는 경우
2.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연 공동연구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기관과 합의를 거쳐 개별 개발사업을 통합 또는 분리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심의결과를 사업계획서 제출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총괄사업계획서의 작성)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7조의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된 당해 연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종합하여 당해 연도의 총괄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의 기술습득효과, 기술과급효과, 사업성등의 분석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사업계획서의 확정, 통보)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8조의 총괄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에 통보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해 협약 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개발사업 선정의 특례)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에서 추진하기로 의결된 사업의 경우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

제21조(사업비의 계상) ①사업비 계상은 다음 각 호의 비목별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목별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인건비는 개발사업에 직접종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참여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직급별 평균 인건비로 하되 다음 각 목은 예외로 한다.

가. 공무원으로서 정부에서 100% 보수를 지급받는 자는 인건비를 계상, 지급할 수 없다.

나. 동일 연구원이 다수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2. 직접연구비는 당해 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임차료, 기자재 구입비 등을 말하여 세부기준은 개발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간접연구비는 당해 개발사업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제잡비 등을 말하여 세부기준은 개발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제공동개발사업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동개발분담금은 기술정보활동비로 계상한다.

4. 개발보전비는 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리에 따른 제반 간접경비로서 제1호 및 제2호 금액 총액의 10%이내(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 5%이내)로 계상한다.

5. 위탁사업비는 당해 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명기한 비목별로 계상하고 조정한다.

제22조(정부출연금의 지원비율) ①당해 년도 정부출연금은 별표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②제1항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개발사업 수행 중에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유형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차기년도를 포함한 그 이후의 개발사업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체사업의 정부출연금의 지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부담형태) ①당해 연도 사업비 중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형태로 한다.

1. 인건비
2. 보유 연기자재의 사용료(임차료)
3. 보유 건품, 시약 및 재료의 사용료

②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부담액의 20%이상은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장은 정부출연금 등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장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사업비의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 받거나 공제 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 체결된 사업기간 이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 이외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비용이라도 전담기관의 장이 개발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국제공동개발사업의 협약전 비용 중 운영위원회가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직급별 평균 임금 기준으로 계상된 인건비는 주관기관의 장이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기관의 보수체계, 참여 연구원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협약당시의 사업비를 제21조 규정에 의한 비목별로 20%이상 변경하며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위탁사업비가 당해 연도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위탁사업의 비목별 20%이상 변경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보전비는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견품, 시작품 제작 및 기자재 구입변경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위탁사업의 경우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협약체결 등

제25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항공우주기술훈발사업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이 동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주관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의한 개발사업협약서 및 그 첨부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부담 현금납입증빙서류는 민간부담현금을 입금한 개발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참여기업 명의의 약속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의 사본으로 한다.

③협약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간에 공동으로 체결하며 위탁개발사업은 주관기관의 장과 위탁개발기관의 장 간에 체결한다.

④주관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의 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래의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개발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제26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개발사업 협약의 변경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의 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개발사업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협약의 해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개발사업 협약의 해약을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개발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기술과급효과 측면에서 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개발사업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28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전담기관에 분할 지급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정부출연금을 지급 받은 후 지체없이 해당 주관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경영여건 악화, 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당해 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부출연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전담기관에서 정부출연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전담기관의 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사업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매 반기별로 정부출연금 지급현황 및 이자발생현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고, 평가 등

제29조(진행현황의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이 계속사업인 경우 당해년도 연차별 진도보고서를 당해년도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진도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30조(사업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최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의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초록 및 참여기업의 대표 등의 사업성과확약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패”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31조(연차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별 진도보고서를 검토한 후 당해 개발사업을 “계속”, “중단”, “보완”의 3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완”으로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보완 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단”으로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평가결과, 보완계획 및 이의신청을 종합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또는 “중단”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 결과에 대하여 검토한 후 연차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확정된 연차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중단”으로 확정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이 규정에 의한 평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 주관책임자 또는 참여기업 대표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개평가회를 가질 수 있다.

제32조(최종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검토한 후 개발사업 결과에 대하여 “성공”, “실패”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재평가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평가 및 재평가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최종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확정된 최종평가결과를 전담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실패”로 평가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이 규정에 의한 평가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 주관책임자 또는 참여기업 대표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개평가회를 가질 수 있다.

제33조(중간점검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의 진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세부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의 장에게 문제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년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도의 서식에 따라 당해 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 시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보조연구기관, 대학인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총(학)장의 확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당해 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검토한 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 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 등은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당해 개발사업 최종 종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환수 및 제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발생한 사업비 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주관기관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비 잔액을 차기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단”의 경우 성실 또는 불성실 수행으로 분류하여 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실패”의 경우 성실 또는 불성실 수행으로 분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단”,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실패”의 경우 당해 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연구기자재 등 유형적 발생품을 주관기관으로부터 환수토록 할 수 있으며, 다만,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수행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단”,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실패”의 경우 당해 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업, 주관책임자, 참여기업의 대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수행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을 매 분기별로 국고에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환수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은 연구기관, 학교 등 관련기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부·양도할 수 있다.

제8장 개발사업성과의 활용

제36조(개발사업성과의 활용) ①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성공으로 평가된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업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성과의 실용화를 추진 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에 실시계약 체결을 요청하고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기업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참여기업으로부터 계약체결 의사가 없음을 통보 받을 경우 제3의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성공으로 평가된 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평가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성과의 공개활용에 관한 계약을 전담기관의 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4조 제1호 및 제4호 사업의 경우 사업의 최종평가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성과의 실용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성과를 공개 활용 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최종보고서의 목록, 최종보고서 초록집을 발간하여 관련 연구기관, 학교, 기업 등 관련기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37조(기술료의 납부) ①제4조 제1호 및 제4호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성과를 실용화할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40% 범위 내에서 제25조의 협약체결 시 정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공동개발사업의 경우 공동개발분담금으로 지원되는 정부출연금 중 직접개발에 사용되지 않는 비용은 전액 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납부할 경우 주관기관 및 실시기업 명의로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으로(8년 동안 균등분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어음 만기일 이전에 실용화 지연 및 실용화 실패의 사유로 기술료 납부기한연장, 기술료감면, 기술료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화 성공 여부를 평가하여 협약 시 정한 기술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결과와 사용실적을 매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주관기관 또는 실시기업이 실시계약을 위반하거나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이 기술료를 조기에 완납할 경우 일정 금액을 감면 할 수 있다.

제38조(산업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①당해 개발사업 수행결과 발생된 산업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지분은 주관기관 소유로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정부소유로 하며, 정부소유 지분은 해당 주관기관이 기술료를 납부한 시점부터는 주관기관 소유로 한다. ②실시기업이 주관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주관기관 및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용 실시권은 실시기업에 무상 양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당해 개발사업의 수행중에 발생한 연구기자재(연구시설포함)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금액 범위 내에서 참여기업이 소유하고자 하는 연구기자재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종료 후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④비영리 주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적 발생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참여기업 및 실시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참여기업이나 실시기업이 아닌 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⑤정부지분에 해당하는 유형적 발생품 및 지적재산권을 유상양도할 경우 해당대금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상용기준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9조(기술료의 사용)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징수된 기술료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1.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우수연구개발의 장려 및 촉진하는 사업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전담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0조(전담기관의 지정) 제5조에 의한 전담기관은 한국항공우주기술개발 연구조합으로 하되,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41조(평가기관의 지정) 제8조에 의한 평가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한다.

제42조(관리운영 예산)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년도 개발사업 예산의 5%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전담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포상)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0조의 관리운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기술을 개발한 연구관련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수당지급) 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지침의 제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

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이전에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은 당해 사업의 협약 체결 시 작용된 요령에 따른다. 다만, 당해 사업의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업의 대표, 위탁기관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 요령을 적용할 수 있다.

②이 요령을 고시한 당해 연도 개발사업의 수요조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예외조치) 2개 이상의 부처에서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동운영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별 표] 정부출연금의 지원비율

개발사업의 구분	주관 기관의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제4조 1,4호	중소기업	사업비의 75% 이내
	대기업	사업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1/2이상인 경우 65%(해당 중소기업은 75%)
	연구소, 대학 등	사업비의 65% 이내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1/2이상인 경우 75%
제4조 2호	기업	사업비의 80% 이내
	연구소, 대학 등	사업비의 100% 이내
제4조 3호		사업비의 100%